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[] 승인 [] 연장승인 결과 통지서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선임인 [] 해당 [] 비해당 | | | | |
| | 사업장명 | | | | |
| | 주소 | | | | |
| 제품명 | [] 연구개발용 [] 비연구개발용 | | | | |
| 결과 | [] 승인 [] 부분승인 [] 불승인 | 승인번호 | ※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| | |
| 세부 승인결과 | 신청물질 | | 검토결과 | | 세부 승인결과 |
| | 대체명칭 | 대체함유량 | 대체명칭 | 대체함유량 | |
| | 1. | | | | [] 승인 [] 불승인 |
| | 2. | | | | [] 승인 [] 불승인 |
| 3. | | | | [] 승인 [] 불승인 | |
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 검토 | ※ 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| | | | |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[] 승인 [] 연장승인 결과를 통지합니다.

※ 승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